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우리가족의 재난사고와 후유장애, 안전을
창원시민안전보험으로 지킵니다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보험기간 :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9월 21일
- 보험료 : 창원시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보장내용	상세	보상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손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3%~100%)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손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3%~100%)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1급~5급)	
농기계 손해	사망	200만원
	후유장애(3%~100%)	최대 200만원
익사 사고	사망	200만원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200만원
	치료 요하는 손해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조)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보험문의 **2019년 11월 20일 ~ 2021년 9월 21일 사고발생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2018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19일 사고발생시

▶ 현대해상화재보험 (☎02-475-8115)

※보험금 청구서 양식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보험범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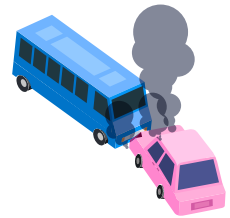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기차, 선박, 지하철, 전철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농기계 상해 사고』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공제금 지급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강력범죄 상해』란?

○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 38정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 기타문의 사항은 창원시 **시민안전과(☎225-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